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래수산업 인력 육성 대상에 청년수산인 추가〉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05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미래수산업 인력 육성 대상에 청년수산업인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 출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미래수산업 인력육성 대상에 청년수산인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미래 수산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 대상에 청년수산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u>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u> 에 필요한 시책을 <u>수립하고</u>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 ----- <u>수립하여</u> -----.

나. 검토의견

- ☐ 최근 어가 인구 동향¹⁾을 살펴보면, 전체 어가 인구가 2019년 11만 3,900명에서 2023년 8만 7,1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65.2%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²⁾,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수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

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23년 기준), 2024.4.

2)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귀어가구는 9,888개 어가(1만 2,876명)로 연 평균 988개 어가, 1287명이 귀어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어가인구는 연 평균 5,653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한 지원 등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임.

[어가 및 어가인구(2019년~2023년)]

(단위: 천 가구, 천 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어 가	50.9	43.1	43.3	42.5	41.8	-0.8	-1.8
어가 비율(%)*	0.3	0.2	0.2	0.2	0.2	0.0	-
어 가 인 구	113.9	97.1	93.8	90.8	87.1	-3.7	-4.1

* 자료: 통계청(2024)

[연령별 어가인구(2022~2023년)]

(단위: 천 명, %)

구 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2	90.8 (100.0)	8.4 (9.3)	3.7 (4.0)	7.5 (8.3)	14.8 (16.3)	31.3 (34.5)	25.1 (27.7)
2023	87.1 (100.0)	7.0 (8.0)	3.3 (3.8)	6.6 (7.6)	13.4 (15.4)	30.9 (35.5)	25.8 (29.7)
증 감	-3.7	-1.4	-0.3	-0.9	-1.3	-0.4	0.7
증감률	-4.1	-17.0	-8.8	-12.5	-9.0	-1.2	2.9

* 자료: 통계청(2024)

□ 청년의 경우 자금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산업 진입에 필요한 비용, 능력, 경력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수산업 분야에 청년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과 그 밖에 법률의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수산인의 유입·정착을 위해 청년 유입 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³⁾ 실시하고 있고,

3)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참조

2020년 제정⁴⁾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청년어업인 대상 영어(營漁)체험 기회 제공, 어업 관련 교육 실시, 청년어업인 고용 우대 등 청년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수산업 및 어촌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정부의 ‘후계 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 수산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미래 수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 청년수산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미래 수산업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라는 법률조항의 취지를 실현하고 청년 수산인에 대한 시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현행법에서는 후계수산업경영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입법례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험교육, 고용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인에 지원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자연스럽게 후계농어업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따로 청년수산인에 대한 시책마련의 근거를 두는 것에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20.5.19 제정, '21.5.20 시행

【「후계청년농어업인법」상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비교】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정의)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요건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정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요건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
(지원내용) ○ 후계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해 자금, 컨설팅, 기술·경영교육 등 지원 가능 ○ 후계농어업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특화 교육 등 지원 가능 ○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년농어업인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해 자금, 컨설팅, 기술·경영교육 등 지원 가능 ○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 <u>영농영어정착지원금</u>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 고용 시 비용의 전부·일부 지원 가능 ○ 후계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 지원 시 청년농어업인 우대 가능 ○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활동 체험기회 제공 가능

□ 참고로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⁵⁾한 바 있고, 당시 현행법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

5) 정부제출,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64호)

참고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유입·정착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본예산	증감	%	
◇ 합 계	35,528	43,783	8,255	23.2	
I 청년어업인 유입	12,362	8,630	△3,732	△30.2	
수산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5,250	5,250	-	전년동	· 수산분야 창업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육성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수산계고교특성화)	2,651	2,776	125	4.7	·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승선실습, 현장 실습훈련, 실습장비 등 지원(9개교)
어선청년임대	450	1,125	675	150	·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해주고 임대비 일부(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2023년 전 지역 어선 18척 임대 지원
양식장임대사업	-	397	-	순증	· 귀어귀촌 청년 등의 양식업 창업시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양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비용(최대 2,750만원) 지원 및 교육 등 정착 관리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어인의 집 귀어학교 개설 등)	4,011	1,723	△2,288	△57.0	·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통해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청년창업(수산)장학금)	-	132	132	순증	· 수산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
II 초기 정착단계	23,166	35,153	11,987	51.7	
① 경영지원	3,340	2,340	△1,000	△299	
수산전문인력 양성(R&D)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스마트수산업연구센터, 미래수산물연구센터)	3,000	2,000	△1,000	△33.3	·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술, 미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영역과 수산분야 소양을 겸비한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수산경영대학과정)	340	340	-	전년동	· 수산계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화된 어업인 교육과정 운영하여 수산벤처 인재 및 전문경영인 양성(8개대학)
② 기술(교육)지원	493	493	-	전년동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경영기술교육)	117	117	-	전년동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 정보의 습득 및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어촌 현안문제 해소 도모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수산업경영인교육)	226	226	-	전년동	· 수산분야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어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
어업인교육후려 및 기술지원 (창업어가멘토링)	150	150	-	전년동	· 수산업 분야 신규 창업어가 및 귀어민의 안정적인 영여정착 도모
③ 생계·정착지원	2,906	3,647	741	25.5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	980	1,120	140	14.3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및 고령화 해소
청년어촌정착지원	1926	2,527	601	31.8	· 청년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 정착금 지원을 통해 어촌 고령화 해소
④ 장비·시설지원	-	-	-	-	
⑤ 융자지원	16,427	28,673	12,246	74.5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이자보전)	10,136	17,858	7,722	76.2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비용 지원(융자) * 최대2~5억원, 연리1~1.5%,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이자보전)	6,291	10,815	4,524	71.9	· 귀어귀촌을 희망자에게 귀어 창업과 주택구입 대출(융자)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0.75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III 정착 후	-	-	-	-	

* 자료: 해양수산부